

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 고시

최저임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3월 29일  
고용노동부장관

1. 한국경영자총협회
2. 한국무역협회

<부칙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